

대전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56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구

변론 종결 2024. 10. 23.

판결 선고 2024. 11. 2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4,454,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25,1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1. 5.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22. 4. 5.,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22. 1. 10.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2. 2. 11. 피고에게 이자로 1,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2. 8.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3. 6. 15. 위 대여금채무 322,191,780원과 경매비용 2,917,000원 합계 325,108,780원을 변제공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제 850),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변제공탁을 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248,183,672원임에도 피고는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여 그 차액인 76,925,108원(= 325,108,780원 - 248,183,67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23. 6. 1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별지 총당액계산표 기재와 원금 242,705,479원, 이자 65,031,769원 합계 307,737,248원이 되는데 피고가 원고가 공탁한 322,191,780원(경매비용 제외)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14,454,532원(= 322,191,780원 - 307,737,248원)을 더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대여금 14,454,53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 2. 11.자 1,250만 원 외에도 추가로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5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454,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도영

별지